

예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선정 평가기준표

평가항목		배점	평점 만점	비고
1. 외부환경	1-1. 사업대상 지역 정치/사회적 안정성	1	5	계량 평가
	1-2. 사업대상 지역 경제 환경	1	5	계량 평가
	1-3. 사업대상 지역 자연 환경	1	5	계량 평가
2. 내부역량	2-1. 국내외 투자개발 인프라사업 수행 경험	4	20	계량 평가
	2-2. 대상지역 사업 경험	5	25	계량 평가
	2-3. 기업신용등급	3	15	계량 평가
	2-4.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	3	15	정성 평가
3. 사업계획 적정성	3-1. 사업추진단계	6	30	정성 평가
	3-2. 수입의 안정성	8	40	정성 평가
	3-3. 사업추진구조(참여기업 구성의 적정성)	5	25	정성 평가
4. 공익성	4-1. 수출파급효과 (국내 기자재/인력 활용 여부, 국내기업과 동반진출 등)	2	10	정성 평가
	4-2. 주재국 정책 및 사업 적합성	1	5	정성 평가
5. 기타 가점	5-1.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관리사업 : 10점			
	5-2.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참여 사업 : 5점			
	5-3. 중소·중견기업 참여 사업 : 5점			

※ 세부 평가기준상 점수 × 세부항목 배점 = 평점

※ 정성평가는 평가항목별로 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로 함. (위원이 5인 이하일 경우에는 전체의 산술평균 점수로 함)

※ 종합평점 150점 이상을 득점한 사업 중 고득점 순으로 대상사업 선정

세부 평가기준

1. 외부환경 관련

1-1. 사업대상 지역의 정치적/사회적 안정성: 외교부 고시기준 여행경보 해당 사항 없는 경우(5), 여행 유의 국가(지역)(4), 여행 자제 국가(지역)(3), 여행 제한 국가(지역)(2), 여행 금지 국가(지역)(1)

※ 다수의 국가, 지역에 걸친 경우 가장 위험한 지역의 배점 부과

1-2. 사업대상 지역 경제 환경: 신청 직전연도 IMF 공시 GDP 성장률 기준 전년도 개도국 평균 이상(5), 전 세계 평균 이상(4), 선진국 평균 이상(3), 선진국 평균 이하(2), 채무불이행/IMF 지원 대상 등인 경우(1)

※ 다수의 국가, 지역에 걸친 경우 가장 열위한 지역의 배점 부과

1-3. 사업대상 지역 자연환경 : 최근 5년간 화산·지진·해일·태풍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음 (5), 최근 5년간 자연재해 1회 발생(4), 최근 5년간 자연재해 2회 발생(3), 최근 5년간 자연재해 3회 발생(2), 최근 5년간 자연재해 5회 이상 발생(1)

※ 사업지역이 여러 국가, 지역에 걸쳐 있고 각 지역별 재해 발생 상황이 다른 경우 가장 위험한 지역 기준으로 평가

※ 지진의 경우, 진도 5.0 이상 규모만 고려

2. 내부 역량 관련

2-1. 국내외 투자개발형 인프라 사업 수행 경험 : 사업주로서 직접 수주 3건 이상(5), 사업주로서 직접 수주 1~2건(4), EPC 또는 O&M 계약 3건 이상(3), EPC 또는 O&M 계약 1~2건(2), 해당 사항 없는 경우(1)

※ 사업주 참여와 EPC 계약수주가 함께 있는 경우, 둘 중 높은 점수만을 인정

2-2. 대상지역 사업 경험(과거 5년 내) : 사업실적 7건 이상 보유(5), 사업실적 5~6건 보유(4), 사업실적 3~4건 보유(3), 사업실적 1~2건 보유(2), 해당 사항 없는 경우(2)

2-3. 기업신용등급 [미비시 무담보 기업어음 등급] : AA [어음등급 A1] 이상(5), A [어음등급 A2] 이상(4), BBB [어음등급 A3] 초과 (3), BBB [어음등급 A3] 이하(2), 등급 없는 경우(1)

※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할 경우 대표사만 평가

2-4. 시공능력 등 기술적 역량 : 매우 우수(5), 우수(4), 보통(3), 미흡(2), 매우 미흡(1)

※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

3. 사업계획 적정성 관련

3-1. 사업추진단계

3-1-1 제안형 수의계약사업 : 현지 정부(또는 발주처)와 구속력 있는 사업 관련 협약 체결(5), 현지 정부(또는 발주처)와 구속력 없는 사업 관련 협약 체결 (4), 현지 조사 등 사업개발을 추진(3), 현지 정부(또는 발주처)로부터 사업제안 요청을 받은 경우(2), 기타 경우(1)

3-1-2. 입찰사업

3-1-2-1 민자사업 제안자 가점방식 : 현지 정부(또는 발주처)와 FS 등 사업 추진에 합의(5), 현지 정부(또는 발주처)와 사업 관련 협약 체결(4), 민자사업으로 공고(3), 현지 조사 등 사업개발을 추진(2), 기타(1)

3-1-2-2 일반경쟁 : PQ 통과(5), 입찰(PQ 포함) 공고(3), PQ 공고 이전인 경우(1)

3-1-2-3 제한(지명)경쟁 : 현지 정부(또는 발주처)로부터 사업제안요청을 받은 경우(5), 현지 정부(또는 발주처)와 사업 관련 협약을 체결(3), 이외의 경우(1)

※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

3-2. 수입 안정성 : 국가/공기업이 수입 보장(5), 민간기업이 수입 보장(4), 고정 및 변동수입 수취(3), 변동수입만 수취(2), 수입모델이 불분명(1)

※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

3-3. 사업추진구조(사업의 목적, 기술적 특성, 수입의 안정성 등을 고려한 출자자구성의 적합성 및 출자자의 출자 가능성을 평가) :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 주체별(정부, 사업자, 건설, 운영, 투자 등) 자본참여 및 출자 가능성, 총사업비 대비 자기자본 출자비율의 적정 정도를 5~1점으로 평가

※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

4. 공익성 관련

4-1. 수출과급효과 : 국내 기자재/인력 활용 여부, 국내 타 산업기업과 동반 진출 노력도 등을 평가 : 매우 큼(5), 큼(4), 보통(3), 작음(2), 없음(1)

※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

4-2. 주재국 정책 및 사업 적합성 : 매우 큼(5), 큼(4), 보통(3), 작음(2), 없음(1)

※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평가위원이 정성 평가

5. 기타 가점

5-1. 관리사업 가점 : 이전의 공모 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선정되지 않은 사업 중 공사의 Deal Pipeline에 등록된 사업으로, 사업 및 금융구조 등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사업

5-2.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공동참여사업 가점 : 해외투자개발사업에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

5-3. 중소·중견기업 참여 사업 가점 : 중소·중견기업이 추진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

주) 세부평가 기준에서 정성평가 의외 항목은 계량평가 항목임